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4일 03시 43분



목차

| | |
|-------------|---|
| 목차 | 2 |
| 혼인신고 안내 | 3 |
| 혼인신고 의의 | 3 |
| 혼인 신고 안내 | 3 |
| 업무개요 | 3 |
| 혼인의 성립요건 | 3 |
| 신고장소 | 3 |
| 혼인적령 | 3 |
| 업무처리 절차 | 3 |
| 첨부서류 및 기타사항 | 4 |

|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출생신고 안내 | 사망신고 안내 | 혼인신고 안내 | 이혼신고 안내 |
| 성,본 창설 및 개명 | | | |



혼인신고 의의

혼인이란 부부로서의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.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
혼인 신고 안내

업무개요

혼인의 성립요건

-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을 것
- 혼인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
- 혼인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을 것 (예 :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)
- 금혼친족간의 혼인이 아닐 것
- 중혼이 아닐 것

신고장소

남편이나 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(구)·읍·면의 사무소

혼인적령

만 18세
 ※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요함

업무처리 절차

1단계

혼인신고서 접수



2단계

기록(전국 가족관계등록 관서)



3단계

주민등록지 주민자치센터에 혼인사항
통보

첨부서류 및 기타사항

- 신고서 1부
- 혼인의 당사자가 시(구)·읍·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거주하는 외국의 방식에 따라 그 나라의 권한있는 기관에 신고하여 혼인신고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내에 증서 등본을 첨부하여 혼인신고하여야 한다.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